

제 98

행정명령 (EXECUTIVE ORDER)

**재난 선포 지속 및 법률 및 규제 특정 조항 중단 또는 수정**

본인은 뉴욕주의 모든 62 개 카운티에 재난 비상을 선포하는 행정명령 제 47 호를 2012 년 10 월 26 일에 발령했습니다.

행정법 제 29-a 조는 법령, 지방법, 조례, 명령, 규칙 또는 규정의 조항, 또는 그 일부를 준수하는 것이 재난 비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킬 경우, 법령, 지방법, 조례, 명령, 규칙 또는 규정, 또는 그 일부의 정지, 변경 및 수정을 허락하고 있습니다.

본인은 교통 인프라 복구를 촉진할 수 있도록 법률 조항을 정지하는 행정명령 제 50 호를 2012 년 10 월 31 일에 발령했습니다.

본인은 주 계약 및 주 시설물 수리와 관련된 법률 조항을 정지하는 행정명령 제 79 호를 2012 년 11 월 20 일에 발령했습니다.

본인은 행정명령 제 94 호, 제 91 호, 제 87 호, 제 81 호가 지속됨에 따라 행정명령 제 50 호와 제 79 호에서 명령한 특정 법률 조항 정지 및 수정을 지속하는 행정명령 제 97 호를 2013 년 3 월 25 일에 발령했습니다.

행정법 제 29-a 조에 따르면 법 조항은 30 일 이상 중단될 수 없으나, 주어진 상황 및 연관된 모든 사실들을 고려하여, 중단 기간이 30 일 추가로 연장될 것입니다.

**이제, 그러므로 본인 ANDREW M. CUOMO** 뉴욕주 지사는 행정법 제 2-B 조의 제 29-a 항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, 그리고 모든 관련된 사실 및 상황을 재고려한 후에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.

1. 행정명령 제 47 조에 의해 명령된 재난 선포는 Bronx, Kings, Nassau, New York, Orange, Putnam, Queens, Richmond, Rockland, Suffolk, Sullivan, Ulster, Westchester 에서 90 일 동안 지속됩니다.

2. 행정명령 제 97 호가 지속됨에 따라 행정명령 제 79 호에 의해 명령된 법률 조항의 정지 및 수정은 2013 년 5 월 24 일까지 지속됩니다.
3. 행정명령 제 97 호가 지속됨에 따라 행정명령 제 50 호에 의해 명령된 법률 조항의 정지는 2013 년 5 월 29 일까지 지속됩니다.

이천십삼년 사월 이십사일

올버니시에서 주 옥새 및

자필로 서명합니다.

주지사

주지사 비서